

청주교육대학교 생활관 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3. 4. 7.
1차 개정	1996. 8. 1.
2차 개정	2000. 2. 3.
3차 개정	2000. 10. 11.
4차 개정	2002. 11. 18.
5차 개정	2004. 10. 11.
6차 개정	2005. 10. 10. <규칙 제1368호>
7차 개정	2006. 12. 21. <규칙 제1369호>
8차 개정	2014. 10. 29. <규칙 제1361호>
9차 개정	2015. 3. 4. <규칙 제1365호>
10차 개정	2015. 11. 13. <규칙 제1399호>
11차 개정	2017. 9. 21. <규칙 제1451호>
12차 개정	2018. 9. 18. <규칙 제1473호>
13차 개정	2021. 1. 5. <규칙 제1577호>
14차 개정	2021. 12. 10. <규칙 제1591호>
15차 개정	2023. 10. 24. <규칙 제16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청주교육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 운영의 세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생인원) 학년별 사생 인원은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생실배정) 실의 전체적 배정 원칙은 관장이 정하고 배정된 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4조 (입사자격) 생활관규정 제2조에 의하여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으로서 청주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015. 3. 4. 개정>
2.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등록을 마친 자 <2015. 3. 4. 개정>
3. 기타 : 자치회 임원(사생장, 부사생장) 및 명예임원

제5조 (입사자선발) ①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사를 원하는 자가 많아 생활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2015. 3. 4. 개정>

③사생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자치회 임원 및 총무는 성적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5. 11. 13. 개정>

2. 기타 일반 입사자는 입학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015. 3. 4. 개정>

④ 생활관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으로 충원하고, 예비후보자로도 충원이 안 될 경우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2017. 9. 21. 개정>

⑤ 관장은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 9. 21. 개정>

제6조 (입사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별점 누적에 의하여 퇴사한 자. <2015. 3. 4. 개정>

2. 휴학중인 자. <2015. 3. 4. 개정>

3.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015. 3. 4. 개정>

4.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015. 3. 4. 신설>

5. 건강상 관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2015. 3. 4. 신설>

6. 기타 관장이 판단하기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퇴사) 퇴사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시 제한 사유 발생.

2. 본인의 자유에 의한 퇴사.

3. 사생활 준칙 제4조 4항에 해당하는 자.

제8조 (퇴사절차) 퇴사 절차는 사생활 준칙 제4조 5항에 따른다.

제 3 장 자 치 회

제9조 (설치) 생활관 규정 제13조에 의한 자치 기구를 다음과 같이 둔다.

1.임원회

2.총무회

제10조 (구성) ①임원회는 사생장 1명과 부사생장 4명으로 구성한다.<2017. 9. 21. 개정>
<2021.12.10. 개정> <2023.10.24. 개정>

②총무회는 총무 5명으로 구성한다. <2017. 9. 21. 개정> <2023.10.24. 개정>

제11조 (임원선출) ①사생장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총무 중 1명을 관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마친 사생장은 명예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17. 9. 21. 개정>

②부사생장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총무 중에서 심사를 거쳐 관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마친 부사생장은 명예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2학년 사생 중 후보등록과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2017. 9. 21. 개정>

③모든 임원은 2학기 중에 선출하되 임원 결원에 의한 충원은 예외로 한다.<2015. 3. 4. 신설>

제12조 (총무선출) ①총무는 생활관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사

생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선출 7일 이전에 관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1학년 사생 중에서 입후보하되 별점 7점 이상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2015. 3. 4. 신설>

③선출은 2학기 중에 실시한다.

④선출방법은 사생장과 부사생장의 면접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5명을 임명하되, BTL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을 남자 사생으로 임명한다. <2017. 9. 21. 개정><2023.10.24. 개정>

제13조 (기능) ①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생전체의 사내생활 관리 및 통괄
2. 총무회 관리
3. 사생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익 보장 활동

②총무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생 자치활동 및 운영 실태 파악
2. 사내 환경 미화 및 질서 유지
3. 공동생활의 효율적 운영
4. 사생장 및 부사생장의 사생관리 보조
5. 기타 사생에 관한 봉사

제14조 (회의) 임원회 및 총무회는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 4 장 일과 시간표, 외출 및 외박

제15조 (일과시간표) 사생생활 준칙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6조 (외출, 외박) 사생생활 준칙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광고, 게시물, 행사 및 집회

제17조 (광고, 게시물 및 간행물) ①사생은 광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사내 사생 광고, 게시물, 간행물의 발간 계획, 발간 및 배포는 사내 정숙을 위하여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행사 및 집회) 사내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생생활준칙 제2조의 일과 시간내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5.>

제 6 장 생활관비, 생활관비심의위원회 및 예산, 결산

제19조의 1 (생활관비) ①생활관비는 재정생활관은 관리비, 식비로, BTL생활관은 운영비, 행정관리비, 식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중도 입·퇴사자 등에게는 생활관비의 일부를 징수 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생생활 준칙 제2조에 의한다. <2015. 3. 4. 개정>.

<2017. 9. 21. 개정>

②관장은 필요할 경우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2015. 3. 4. 개정>

③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식한 경우 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015. 3. 4. 개정>

④생활관 자치회 임원인 사생장 및 부사생장은 생활관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2015. 3. 4. 개정>, <2017. 9. 21. 개정>

⑤생활관비는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집행된다. <2017. 9. 21. 개정>

제19조의 2 (생활관비심의위원회) <2018. 9. 18. 신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2명, 학생대표 3명, 학외인사 1명, 외부 관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생활관장, 교직원<생활관 행정팀장, 경리팀장>, 학생대표<사생상, 재정생활관 부사생장, BTL생활관 부사생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위원(학외인사, 외부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 결산) 관장은 결산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7. 9. 21. 개정>

부 칙

본 세칙을 199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 생활관 입사자에게는 재입사 자격이 주어진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3. 개정 제1399호>
①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1. 개정 제1451호>
①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8. 개정 제1473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5. 개정 제1577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0. 개정 제1591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24. 개정 제1641호>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자치회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